

투자심사위원회 회의록

2013. 6

기 획 조 정 실 (재정담당관)

작성자

과명: 재정담당관

담당: 홍세정
(☎2133-6873)

팀장: 김미정
(☎2133-6869)

과장: 김갑수
(☎2133-6860)

2013년 5월 투자심사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 일 시 : 2013. 5. 29(수) 14:00~16:25
- ◆ 장 소 : 본관(신청사) 3층 소회의실 1
- ◆ 참 석 : 11명(외부위원 7, 내부위원 4)
 - 내 부(4) : 경영기획관, 예산담당관, 행정과장, 기술심사담당관
 - 외 부(7) : 류현숙, 신수현, 이정화, 김동선, 이창수, 송인주, 강정규
- ◆ 안 건 : 광진구 복합청사 건립 등 18건
- ◆ 심의결과 : 적 정 4건, 조건부추진 9건, 재검토 5건

□ 위원 발언내용

- 위원장 :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3년 5월 투자심사 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 광진구 복합청사 건립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부서의 사업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부서장 : 광진구 총무과장 사업 설명
- ○○○위원 : 안행부 쪽 하고는 어떻게 되셨나요?
- 사업부서장 : 현재 안행부의 재정정책과와 상의를 했는데요, 올해 원래 2008년도 청사 대책 관련된 후속 조치로 2009년도 이후부터 총 다섯 차례에 걸쳐서 청사건축 보류에 대한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쪽에서 제안했던 사유 중에 중요한 첫 번째 사유가 '과대청사에 대한 적정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 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2010년도 8월 달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시행령을 범으로서 기준 면적이라는 것을 확정을 했습니다. 확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가 지방행정체제 개편으로 제정된 사안이었습니다. 2010년도부터 지방행정체제 위원회 특별법이 활동을 하면서 시 구간 통합합 관련된 문제가 있었는데요, 2013년도 12월 말까지 시한을 잡았던 이유도 특별법의 제정 기한이 올해 말까지입니다. 실제로는 활동자체가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이미 국회에 계류된 상태이고요, 그 법 자체에 제정시한 자체가 올해 말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후에는 행안부 쪽에서는 그것에 관련된 부분은 '정치적인 유도리가 있기는 하지만 큰 변화는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행안부 쪽에서는 안정상의 특별한 미연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일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의견을 받았습시다. 이상입니다.

○ ○○○위원 : 당초 계획을 보면, 첫 번째로 '일부 재원조달계획에서 공간을 여기서 제시한 부분 중에서 3별관이라는 입장에 있는 쪽 매각을 해서 충당한다'는 얘기인데, 그런 계획을 계속 갖고 계시는 건가요?

○ 사업부서장 : 지금 현 상태에서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시교부금하고 자체 재원, 일반회계의 기금 전체적으로 300억 정도로 잡고, 나머지 120억 정도는 동 통합하면서 동청사가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 받고 유희지, 나대지 매각해서 충당을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 지금 구청에서 제시한 경제성 분석이, 거기는 1이상으로 나왔는데, 공공투자센터에서 재검증을 하니깐 0.8밖에 안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 주요인이, 규모가 너무 크다는 거 아닙니까?

○ 사업부서장 : 공공관리센터에서 면적을 줄이고 금액을 맞추라는 의미는 저희가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경제성이 낮게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3별관 건축년도가 30년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낮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위험도를 간과하고 단지 연도로만 따지다 보니까 경제성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사실상 금액이나 면적이나 이것은 우리가 최소한도로 잡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간과하고 하시다 보니까 저희로써도 고쳐야 되는 건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나중에 검토를 해야할 거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비 책정관계는 서울시 친환경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 195만 9천원, m²당. 국토해양부에서 제시한 게 163만원, 조달청에서 제시한 게 196만 5천원이거든요. 저희들은 서울시 친환경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에서 산정을 한 겁니다.

(사업부서 퇴장)

○ 000 위원 : 실질적으로 이게 현장에도 가보았지만 여기는 청사를 합칠 필요성은 충분히 있더라고요. 그런데 행정과에서 특별교부금 196억원 가는 것은 수치상으로 맞는 수치입니까?

○ 000 위원 : 예, 맞습니다.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 나눠드린 표 21페이지를 보시면 2011년 감사원 조사 결과서를 보면,

일반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서울시에서 제공을 하기는 했습니다. 가이드라인 195만원은 최대금액을 제시를 한 거지, 무조건 일괄적으로 195만원을 적용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해당 시설의 기본 설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적으로 규모와 비용을 가이드라인의 최대치에 맞춰놓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경제성이 나타날 수 밖에 없는 이유이고, 잘 아시겠지만 용산구 같은 경우에도 사무 공간 대비 부속 공간 비율이 높았던 청사가 실제 당시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거보다 훨씬 규모가 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사무 공간 면적은 계산식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정확하게 1인당 면적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산정이 됐지만, '나머지 기타 부속공간이나 공용 공간 면적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 안쪽이라 하더라도 너무 과대하게 산정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공공투자센터의 의견입니다.

○ 000 위원 :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라서 그런 재원문제나 이런 거에 우리가 특별하게 할 게 없다면, 행정과에서도 그 부분 규모가 적정한 걸로 되어있다고 한다면, 안행부에도 청사 건립 보류 계획의 일정에 따라서 사업추진 시기는 그때 거기에 맞춰서 조정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타 구의 청사 규모나 이런 것에 대한 형평성들을 감안해서, 규모를 조정해서 추진하라는 조건을 달아서 통과시키면 어떨까요?

○ 000 위원 : 언제 안행부의 지침이 방향이 생기나요?

○ 000 위원 : 올해 말까지요.

○ 000 위원 : 올해 말에 시행이 되게 되는 거죠?

○ 위 원 장 : 내년도니까, 그렇죠. 만약에 내년되면 '안행부 지시에 따르라'는 조건을 달기로 하고, 그 다음에 타 구와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규모는 조정을 하는 걸로 하죠.

○ 위원 일동 :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 서대문구 남가좌1동 주민센터 신축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부서의 사업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부서장 : 서대문구 자치행정과장 사업 설명

○ 000 위원 : 실무위원회나, 소위원회 과정에서 면적에 대해서 서로 별도로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서로 이야기를 협의를 했던 사항이 어떤 사항인가요? 그러니까 서로 지금 계속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인가요?

○ 사업부서장 : 실무위원회에서 그때는 "자치회관 면적이 너무 크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자치회관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을 위한 자치회관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든가,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4층은 그렇게 활용하려고 그렇게 했거든요.

- 000 위원 : 혹시 면적이 넓으면 면적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아마 행정과에서나 소위 때 면적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복합시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예를 들어서 작은 도서관이나 여러 가지의 어떤 주민편의시설을 복합시설로 하게 되면, 구에 어떤 재정 부담도 줄고 할 건데 그런 문제는 검토를 하셨나요?
- 사업부서장 : 그래서 4층을 커뮤니티센터로 저희들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4층이 만약에 면적이 너무 크다고 그런다면, 4층 일부를 3층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신축을 해서 주민자치센터 하고 나서, 나중에 여건이 되었을 때에는, 주민 요구가 있고 그럴 때는 한 층 더 증축을 한다든가, 그런 방안도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 : 지금 2, 3층에 있는 자치회관 규모만으로도, 시에서 지금 행정과장이 말씀하신 가이드라인보다도 훨씬 오버되고 있는데, 거기에 지역커뮤니티센터, 지금 아직 구성되지도 않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들도 아직 설정이 안 되고, 무엇을 할지도 아직 활용방안도 없으시면서, 구체화된 것은 없는데, 일단 큰 공간부터 확보하겠다고 2, 3, 4층을 그렇게 하는 것밖에 안 보이잖아요.
- 사업부서장 :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북가좌1동 청사도 벌써 몇 년 전에 투자심사를 거쳐가고, 작년 10월에 입주를 했는데, 거기도 한 1,600㎡가 되어 있습니다, 면적이요.
자치회관하고 주민센터요.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투자심사 할 때는 ‘자치회관 프로그램 무엇을 하겠다.’ 그런 것은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어차피 자치회관의 일정 면적이 필요한 그런 상태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어떤 딱 목적을 특정을 해서,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업부서 퇴장)
- 공공투자관리센터 : 이게 지금 설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올린 게 아니라, 설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 면적이 어떻게 조정될지를 전혀 모르는 상황이고,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사업 실효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직까지 입주 시기까지 좀 남아 있습니다. 아직 투자심사위원회가 올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두세 번 남아 있으니까, 한 번 정도 반력을 해도 재검토해서 다시 계획을 잡아오는 게, 그게 기술적으로도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000 위원 :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해서, 재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급한 게 아니잖아요.
- 000 위원 : 규모가 쌓인 거 축소되니까, 그 안에서 직원식당이 됐든 뭐가 됐든, 그걸 다시 어떻게 배치하고 운영할 것인지, 그것을 제출해서 다시 올려라, 이렇게 하는 게 나올 것 같습니다.

- 위 원 장 : 그러면 다음번에 재상정하면, 한 2, 3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 거니까 그때 해서, 무슨 다른 문제는 없는 거니까요. 여기는 부지도 확보되어 있다니까, 그럼 그렇게 하는 걸로 결정하겠습니다. 재검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위 원 일동 : 네. 동의합니다.

- 위 원 장 : 성동구 성수1가제2동 복합청사 신축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부서의 사업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부서장 : 성동구청 자치행정과장 사업 설명
- 000 위원 : 신축기준이 30년인데 지금 그러니까 27년, 3년 남았는데, 3년 더 기다리라 그러는 게 맞는 건지, 안 그러면 지금 시에서 역점 적으로 하는 어린이집을 성동구청에서는 본격적으로 대폭 확충하는 데 복합청사로 어차피 짓는다고 그러면 복합청사로 짓는다고 지금 계획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하자 요인이 30년이 안 된 것 때문에 심층심사로 올라온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다른 수요 부분을 감안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저는 반영이 가능할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1가2동에 어린이집이 몇 개 있나요?
- 사업부서장 : 1개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동 2어린이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 : 데이케어센터는 1가2동에 없어요?
- 사업부서장 : 예.
(사업부서 퇴장)
- 000 위원 : 이게 심사과정에서 이야기 나왔던 건데, 30년이 안 됐기 때문에 동 청사 부분은 특별교부금을 신청을 안 한다는 이야기고, 여기는 우선 어린이집이나 데이케어센터나 치매센터나 복합시설 때문에, 서둘러서 한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그런데 행정과에서는 의견이 그 30년이라는 기준 자체가 흔들리는 것에 우려를 많이 하는데, 저쪽 구청에서는 ‘동 청사도 동 청사지만 복합적인 어떤 다른 시설이 시급하다. 그래서 동 청사에 대한 것은 재정을 자기들이 부담하는 것을 부담하겠다.’ 이런 식입니다.
- 000 위원 : 어린이집을 별도로 땅을 부지를 매입해서 짓는다고 생각을 해 보시면 부지 매입해 가지고 기타 등등 하면 손해가 계속 늘어요. 그다음에 데이케어센터 또 하나 짓는다고 하면, 최소 20억 들어간다고 친다고 그러면, 지금 이게 꼭 27년, 30년 그것을 고집해서 다른 것도 못하게 할 게 아니고, 융통성 있게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시에서 공립 어린이집을 짓는데, 한 개 동당 두개소가 안 되는 지역이 우선지역입니다. 그러니까 1과 2군 같은 경우는, 공립어린이집이 한군데 밖에 없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한군데를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개인집을 예를 들어서 부지를 매입해서 짓는다고 치면, 그게 외려 더 공간을 비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조금 융통성 있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 동청사가 있으니까, 27년 문제에 대해서 행정과 입장은 어떻습니까?
- 000 위원 : 주민들이 요즘 요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새로 자꾸 짓게 되면 재정도 어려운데 재정자체가 재정이 악화될까 염려되어서, 가급적이면 30년은 지켜 주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 000 위원 : 사업명은 복합청사 신축이지만, 청사신축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될 것 같아요. 청사는 부지제공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봐줘야지, 그것들을 여기에다가 이야기를 하면, 어차피 사업 자체가 안 되니까, 다른 사업을 위한 긍정적인 것처럼요.
- 000 위원 : 그런 것을 강조를 하고, 복합 센터 아까부터 계속 이야기 나온 이야기가, ‘복합 센터 배치나, 운영의 효율화 방안의 강조가 필요하다.’하는 것을 조건으로 달고요.
- 000 위원 : 예. 이것은 조건부 취지는 좋을 것 같습니다.
- 위 원 장 : 그러면 이야기했던 대로, 이것은 복합시설이고, 그다음에 주민센터 보다는 복합시설동이 훨씬 면적이 크고, 또 부가적으로 비씨도 우리보다 넓게 나왔고,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27년 밖에 안 됐지만, 조건부로 통과시켜주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위원 일동 :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 동대문구 제기동 청사 신축 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부서의 사업설명을 듣고 기록 하겠습니다.

- 사업부서장 : 동대문구청 자치행정과장 사업 설명
- ○○○위원 :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었다고요?
- 사업부서장 : 실시설계가 완료 되었습니다. 당초에 2010년도에 전액 자치구비로 해서 자체심사를 했고요. 이번에 시비, 국비 심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재심사합니다.
- ○○○위원 : 실시설계가 끝났으면, 위원회에서 말하는 면적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사유에 의해서, 설계변경 사유가 발행하면 설계를 할 수 있습니까?
- 사업부서장 : 예. 진행과정에서 필요하다면,
- ○○○위원 : 행정과의 30년이라는 기준이 언제 만들어진 거죠?

- ○ ○ ○ 위원 : 2009년도입니다.
- ○ ○ ○ 위원 : 이것이 2009년 만들어지기 전에 투심으로 통과한 건가요?
- ○ ○ ○ 위원 :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본래에,
- ○ ○ ○ 위원 : 그때도 우리가 어쨌든 30년이라는 것은 통보를 했을 거 아닙니까?
- ○ ○ ○ 위원 : 예. 통보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순수한 구비로 하는 거죠. 특별 교부금 지원받지 않고 순수한 구비로 하는 것은, 구청 자체심사로 합니다. 금액에 관계없이요. 그런데 50억이 넘어가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특별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 투자심사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재정이 없기 때문에, 특별교부금 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받고자, 투자심사를 요청하게 되는 거죠. 구청에서도 투자심사를 할 때, 자체 투자 심사를 할 때도, 시의 어떤 그런 지침을 따라주면 좋은데, 그런 것들이 따라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 ○ ○ 위원 : 지금 현재 부지도 매입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도 완료된 단계인데, 그러면 이게 재검토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 ○ ○ ○ 위원 : 재검토가 되면, 만약에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순수한 구비로 추진을 하든지, 두 번째는 그렇지 않으면 2년 정도, 한 1년 반 정도 걸립니다.
- ○ ○ ○ 위원 : 조금 놔두었다가 해야 됩니까?
- ○ ○ ○ 위원 : 예. 그렇지 않으면 복합청사로 다시,
- ○ ○ ○ 위원 : 규모도 조금 크지 않나요? 이게 규모도 2,000이면은 5~600정도는 큰 것 같은데요.
- ○ ○ ○ 위원 : 저희 필요한 거는 650㎡, 한 450㎡정도 오바 된 것 같습니다. 주민 센터 자체도 758㎡되어 있어 왔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 460㎡, 동대본부하고 포함해서 500㎡정도입니다.
- ○ ○ ○ 위원 : 위원님 결정을 하시고요. 예외적인 거를 적용을 해 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재검토인 것 같고요. 왜 재검토냐, 구분이라든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어야 되겠네요.
- ○ ○ ○ 위원 : 내구연한을 지키고, 적정한 면적을 산정할 것으로요.
- 위 원 장 : 예.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위 원 일동 :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 중랑구 상봉2동 복합청사 건립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부서의 사업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부서장 : 중랑구청 자치행정과장 사업 설명
- 위원장 : 재원조달 계획은 수립이 되어있는 건가요?

- **사업부서장** : 저희가 177억 예산이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비보조가 44억 예산이 됩니다. 나머지 134억을 저희가 3개년 간 계획을 했습니다. 2014년, 2015년, 이렇게 3개 년으로 나눠서 하면 되고요, 또 하나는 현 청사를 매각하는 방법, 그리고 저희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 내에 증가하는 구에 편입된 보유지가 내년에 도로공사에서 70억 정도로 보상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 지역에 재건축 세 군데에서 사업시행 인가를 기다리는 3개 주택 조합에서 받을 수 있는 국유지 매각 대금이 27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데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장** : 3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보면 재원조달 계획이 여러 가지 생겼네요.
- **사업부서장** : 그렇습니다. 3년 전에는 저희가 심사를 받고나서 계속되는 경기침체라든가, 그에 더불어서 재정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좀 지연됐다가, 3년 지난 다음에 다시 하게 됐습니다.
- **○○○위원** : 2009년도에 비해 사업비가 얼마 정도 증액된 건가요?
- **사업부서장** : 8억 3천 5백 정도가.
- **위원장** : 결론적으로 이것은 재심사와 여러 가지 의미인데, 사업비가 어느 정도 증가되거나 하면 또 재조사 되지만, 여기는 기간이 지나서 다시 증가가 된 거죠.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 그런 게 맞는데, 이 시설같은 경우에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동청사와 도서관을 1대 1로 쌍둥이 빌딩형태로 계획을 했는데, ‘시설의 쓸모만 놓고 봤을 때 동청사 부분이 과하지 않나?’라고 저희가 의견을 드린 거고. 실제로 이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BC가 더 낮게 나와야 되는데 도서관 때문에 오히려 BC가 높게 나온 케이스입니다. 복합으로 좀 높게 나왔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현재 동청사 규모로 과도한 거 아닌가.
- **○○○위원** : 그래서 행정과 의견도 가급적이면 기준 면적을 지켰으면 합니다. 동청사 부분은 대부분 면적 기준에 나온 것에 크게 차이가 없는데, 자치회관이 990㎡인데, 보통 저희가 제공하는 게 기준을 제시하는 게 630㎡인데, 여기에 도서관이 들어가거든요. 도서관을 넣다 보니까 저희가 시 도서관 정책과의 의견을 들었더니, ‘중랑에는 도서관이 8개소가 있다. 그런데 42만 명이니까 인구 5만 명 당 1개소로 보거든요. 그러면 8개 정도면 한 개정도는 더 지어도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도서관에 대한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면, 도서관에 대해서 복합청사를 지어도 되는데,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시가 기준을 잡고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자치회관 부분을 준수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투자심사 해주시죠.
- **사업부서장** : 저희가 자치회관 990㎡, 5층에 배치가 되어있는 대강당은 자치회관으로 쓰는 곳이 아니고요, 도서관하고 같이 써야 되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세미나실로 되어있는 소규모

모임만 있고, 거기서 문화강좌라든가 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서관하고 같이 공유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부서 퇴장)

○ 위원장 : 이것은 3년 전에 이미 투자심사에서 어떻게 보면 '적정'으로 판단된 사안이라서 어느 정도 필요성은 인정되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서관, 동주민 센터를 똑 같은 면적으로 하는거 보다 효율적으로 동청사 부분을 조정을, 나중에 설계도 하고 계획도 하고 할 테니까, 그런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조건을 달아서 하면 될 거 같습니다.

○ 위원 일동 :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 한국정보화진흥원 이전부지 매입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부서의 사업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부서장 : 자산관리과 경영팀장 사업 설명

○ ○○○위원 : 지금 매입하고 있는 게 이거랑 그 앞에 광물자원공사입니까?

○ 사업부서장 : 예, 광물공사와 농촌경제 연구원인데요, 농촌경제 연구원은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저희가 분납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계획국에서 용역을 사전에 2부시장과 여러 번 회의를 거쳐가지고 3개 부지를 선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정한 거에 의하면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활용 방안으로써, 문화 소유지역의 서남권에 문화 복합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고, 또는 임대주택 시설, 복지시설, 문화시설 등 다양한 활용용도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지는 현재 건폐율이 24%이고 용적률이 250%까지도 가능한데, 108%로 용적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입하면 용적률이 250%이기 때문에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 ○○○위원 : 건물은 언제 건물이죠?

○ 사업부서장 : 건물은 76년에 준공됐습니다. 건물은 노후된 건데,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바깥에는 조금 노후해 보이지만, 속에는 굉장히 리모델링을 잘해 가지고 굉장히 양호하더라고요. 현재 사용을 그대로 해도 좋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별첨에 사진 보셨겠지만 그 앞에 주차장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가 매입하게 되면 그 앞을 다른 용도로 건물을 신축해서 써도 되고, 상당히 이 부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봐도 좋은 부지라고 봅니다.

○ 위원장 : 당장은 건물 자체를 다른 용도로 쓰는 걸로 활용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여기서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요.

- 사업부서장 : 2015년도 초로 되어 있습니다만,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자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부지 대부분을 매입해 가지고 건물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더 당겨질 수 있습니다.
- ○○○위원 : 이게 공매가격 같은 경우는 이 금액으로 결정이 되신 건가요?
- 사업부서장 : 지금 가격 결정은 408억으로 감정평가로 내어놓은 가격이고요,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 기관의 서울시산하 감정평가하고 정보화진흥원이 상계 평가해 가지고 산술평균가에 매입할 예정입니다. 아마 가격은 여기에서 큰 오차는 없다고 봅니다.
(사업부서 퇴장)
- ○○○위원 : 이건 옛날의 논노패션 사옥입니다. 굉장히 건물 자체가 특이하게 앞에 면적을 넓게 해놓고, 어느 날 정보화진흥원에서 매입을 한 겁니다.
- 위원장 : 의견 없으시면 이 건은 적정으로 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 위원 일동 :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증축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부서의 사업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부서장 : 어린이병원 업무과장 사업 설명
- ○○○위원 : 기부금은 어떤 조건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 사업부서장 : 기부금은 특별한 조건은 없습니다.
- ○○○위원 : 그럼 자치구 사업으로 자치구에서 그걸 유치해서 하는 거겠죠. 기부금을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모아서 하고요. 위원님들 생각은, 이 사업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 있고, 실행을 당연히 해야 될 사업입니다. 문제는 200억이나 되는 기부금이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 확정적으로 확신할 수 있게 되어 있느냐, 현재.' 그걸 제일 걱정하시는 거 같아요. 사전 검토 의견이. 그런 면에서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느냐는 거죠.
- 사업부서장 : 작년에 시장님이 다녀가신 후에 절차가 진행이 됐고, 11월에 대기업에서 응모하고, 대기업 사장이 서울시를 방문해 가지고 거기에 협의를 했습니다. 현재 추진된 사항으로는 금년 6월에 MOU를 체결하고, 7월 달에 현금을 수령하는 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위원 : 기부금이 안 들어오면 사업을 못하는 거죠? 어차피 기부금이 들어오는 걸로 확정돼야만이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고, 그 이전에는 사업이 시비나 이런 걸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 사업부서장 : 일단은 그렇습니다.
(사업부서장)

- ○○○위원 : 실무 때 여기가 어린이 병원 발달센터를 짓는다는 핑계로 직원용 주차장을 너무 많이 확장해서 마치 직원용 주차장을 활용하는 것처럼 보여 진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실무 의견은 과도한 주차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기부금 확보를 확실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적하는 주차장 규모를 축소 조정하는 것을 조건부로 해서 하는 걸로.
- ○○○위원 : 아무런 조건 없는 기부금이죠? 지난번 프리메드는 건물에 자기 기부하는 게 기업 거였어요. 운영까지 하겠다고.
- ○○○위원 : 기부하는 쪽에서는 기부금을 줄때의 조건이 ‘행동발달 치료센터 목적으로만 지어라.’ 말씀을 한 거예요. 사업 세부적인 것을 보게 되면 지하 주차장을 예산과에서 언급을 하기는 했지만, 전반적인 전체 전면적이 다 공원부터 해가지고 공사가 되는 부분이라 규모가 상당히 크거든요. 공사 면적이 넓다 보니까 개발제한, 형질 변경이나 그런 것이 없다고는 하지만 개발제한과 관련해서 국가에다가 비용을 25억 원을 추가로 지하 주차장에만 거의 60억 가까이 들기 때문에, 규모면에서 재조정이 되지 않으면 지정기부금의 목적상도 잘 안 맞고, 과도하게 숲이나 이런 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 주차장 규모를 조정하는 것은, 기부하는 측에서 이 주차장이 어린이 병원 발달센터용의 주차장이라고 증명될 수 있어야 될 테니까, 그 부분이 인정되어서 기부금하고 사업비가 들어가야 될 거고, 예산과에서도 주차장이 반영되면 나중에 알아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 것을 조건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일동 :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 신길동 특성화도서관 건립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부서의 사업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부서장 : 영등포구청 교육지원과장 사업 설명
- ○○○위원 : 국비확보 계획이 있으신가요?
- 사업부서장 : 국비 확보율은 40%입니다. 저희 구에서 도서관은 필수 건립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허락이 안 되면 구비라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고 싶습니다.
- ○○○위원 : 실제적으로 영등포 도서관이 부족하다는 것은 객관적으로도 증명되고 있지만 검토 의견에 보면 평당 사업비가 좀 과도하게 책정돼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 사업부서장 : 예산은 2011년도 가이드라인 기준에 따라 소비자 물가지수들을 반영을 한 금액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내년도 착공과 동시에 예산 금액에다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해가지고

반영을 한 겁니다.

- ○○○위원 : 영등포구에서 도서관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공사비도 고려해서 조정해서 갈 필요가 있다는 염려들이 있어요.
- 사업부서장 : 도서관이 책만 빌려보고 하는 공간이지만 종합공간으로 필요로 하고 타 도서관들이 규모들이 작기 때문에 통합할 수 있는 도서관이 영등포에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시재정비 구역 안에 부지를 마련한 거고, 주민들의 의견도 간절합니다.
- 위원장 : 특별한 질문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사업부서 퇴장)
- ○○○위원 : 문체부에서 국비는 2011년에 20%가 너무 작아서 40%까지 가능하다고 했는데, 도서관 없는 지자체가 많아서 우선 순위에서도 밀릴 거 같네요.
- ○○○위원 : 사업부서는 국비가 안 되면 구비로라도 하겠다고 하네요.
- ○○○위원 : 재건축이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거기가 재건축이 많이 지연이 되어서 계획은 2016년인데 실제로 계획대비 준공되는 게 2019년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 : 또한, 예산 담당관계서 하신 것처럼 평당 사업비가 너무 과다 책정됐어요. 그것도 조정을 하라고 조건을 달겠습니다.
- 위원장 : 국비보다는 구비로 해야 된다는 조건을 명백히 달고, 재원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업 시기도 주변의 재정비사업 추진 일정과 맞추어서 건립시기를 조정해 나가며 자원 안배를 해서 추진하는 걸로 조건을 달아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 위원 일동 :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 성동소방서 신설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부서의 사업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부서장 : 소방재난본부 조직기능팀장 사업 설명
- ○○○위원 : 자체인력 조정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광진 소방서에서 정원을 이관하신다는 거예요?
- 사업부서장 : 광진 소방서 소속으로 되어 가지고 안전센터가 있는데 안전센터 네 군데를 전체 이관하고 실제로 광진 소방서의 행정인력들은 그 부분을 조정하고, 그다음에 본부 전체단위로 조정해서, 실제로 성동소방서를 만듭니다.
- ○○○위원 : 성동소방서의 인력이 광진구에서 셋방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 사업부서장 :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복구를, 전체 23개 소방서를 전체 진단해서, 행정인력을 일부 조정해서, 현장인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 ○○○위원 : 서울시 각 구별로 되어 있나요?

- **사업부서장** : 지금 현재 없는 곳은 금천구하고 성동구입니다. 성동구는 실제로 소방서가 1944년에 생겼다고 합니다. 2008년도에 광진 소방서, 왜냐 하면 광진구 중심이 구의동에 사실 성동 소방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행정구역이 편제로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행정구역을 편제하는 것이 행정의 책임성이나,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으로는 괜찮다.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사실 소방을 하고 있습니다.
- **사업부서장** : 저희들이 당초 제기했던 경제성 분석에서 보다는 사실 출동시간의 단축에 따르는 재산피해나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 부분의 편익을 산정하는 것이 소방관서는 생각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의 기초자료를 최대한 제공한 것이고, 그래서 재분석을 한 것입니다.
- ○○○위원 : 소방서를 이전하는 것은, 행정조직상에서 개편이 되는 게 아닌가요?
- **사업부서장** : 나중에 소방서가 설치가 되면 그 조직이 개편됩니다.
(사업부서 퇴장)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 저희가 첫 번째 의견에서 방법론상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넘어가면, ‘이것은 소방서에 추정방법이 잘못됐다. 평균서비스의 그런 추정방법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제시를 해서, 저희가 소위원회에서 의견을 받아서 다시 한 번 소방재난 본부에서 한 것을 다시 재검토를 했습니다. 재검토를 한 결과, 거기에 맞게끔 제일 처음 타당한 것을 제시를 했고, 편익의 종류를 제3피해 절감이나, 아니면 사망 감소편익으로 했습니다. 다만, 그리고 민원처리 단축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기한 게 어떤 것이 있냐면, 저희는 단지 ‘신속한 출동으로 인해, 인적 물적 사고가 감소할 것이다.’ 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지만, 일단은 그 가정에 대해서는 가정을 인정을 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빨리 출동을 하면, 인적, 물적 사고가 감소될 것이라는 가정을 수용을 해서, 계산해서, 저희가 비싸가 한 1.27정도로 계산 되었습니다. 다만 지금 제시한 것이, ‘기존 타당성보다 논의 조사가 굉장히 충분하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위원 : 공투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교통정보나 이런 것 편익이라고 해서 논란이 많기는 많은데, 사실 이것을 보고 지금까지 보고 한 중에 제일 잘 한 것 같아요.
- ○○○위원 : 이게 정부에서 예산 검사서 할 때는, 소방서 같은 데는 재난시설로 해 가지고, 사실 이것을 타당성, 경제성 검토를 안 한다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공투가 생겼고 하다 보니 까, 이런 것을 심도 있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 실무심사에서 했던 게, 소방행정이 지금 은평 쪽에 만들어 지니까, 대규모 투자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이런 조건을 달은 것이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조건이나 아니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 ○○○위원 : 이것을 더 이상 조건을 붙이면, 지금 '소방공무원 부족하다.' 소방공무원 지금 현장에서 죽고 일어나는 사건사고가 많은데, 그것을 했다가는 이건,
- 위원장 : 그럼 적정으로 통과시키겠습니다.
- 위원일동 :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 삼일로 관광버스 지하주차장 건설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부서의 사업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부서장 : 중구청 치수방재과장 사업 설명
- ○○○위원 : 혹시 빗물저류조로 돌발 홍수 시에 활용하신다고 했는데, 예상분석을 해 보셨나요?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 사업부서장 : 실시설계 할 적에 별도로 검토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 : 그쪽 지역이 침수지역인가요?
- 사업부서장 : 예. 지금 현재 을지로2가가 청계천 주변 저지대로 인해 침수지역입니다.
- ○○○위원 : 물관리국과 협의를 해서 주차장을 넣을 때에는 빗물저류조로 활용하는데, 저류조의 활용이 필요하면 규모가 완화가 되든지,
- 사업부서장 : 그것은 실시설계 때에 하겠습니다.
- ○○○위원 : 실시설계 할 때에 하면 안 되죠. 실시설계하기 전에 지금 해야지, 나중에 실시설계 때 하면 안 되죠.
- ○○○위원 : 예전에 종로에 주차장 건설하는데 관광버스는 상당히 이게 회전반경이 들어가고 나오는 게 틀려서 차가 시뮬레이션 해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시뮬레이션 해 봐서 출구 한번 해보셔야 될 거예요. 회전반경이 크기 때문에, 얼마큼 더 해야 되는 건지 나와야 돼요.
- ○○○위원 : 그 삼일로 기존도로 상에 진출입하는 램프를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추가로 더 확보해서 하시는 거예요?
- 사업부서장 : 8차선을 갖다가 지금 밑에서 진출입로 만들고, 그다음에 여기가 원래 차선이 8차로거든요. 8차선인데 반대편에다가 지금 한 차로를 더 확장을 해야 되고, 기존 차로를 유지하고요.
- ○○○위원 : 아이디어는 좋은데, 실제로 관광버스하고 환경차량이 어떻게 내려가서 턴이 돼서 주차가 되고 나오는 건지, 위에 노면 차량들하고 시간대별로 주차하는 것들이 어떻게 돼서 영

향이 어떻다든지 구체화된 계획들이 드러나 줘야 되는데 그런 그림이 없네요.

○ 사업부서장 : 일단 관광버스가 여기 들어가 가지고, 들어가서 이게 박스구간이기 때문에, 옆으로 나와 가지고 차를 쪽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U턴을 합니다.

(사업부서 퇴장)

○ ○○○위원 : 빗물 저류조 활용에 대한 논의는, 사실 부차적인 얘기거든요. 우기 때 잠시 한번 해보겠다는 이야기이고, 우선 초점은 관광버스하고 환경차량 차고지를 만들어야 된다는 필요성은 다 공감하는데요. 여러 군데를 찾다가 삼일로 지하공간에다 해 보겠다 한 건데요. 저도 교통 전문가이지만, 지금 저기에 나온 저거 가지고는 기술적 타당성이 불충분한 거예요.

○ ○○○위원 : 진입로 한쪽에 하고, 나머지 한쪽은 차로를 더 늘린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혹시라도 거기서 부지를 몇 평이라도 사게 되면 감당 못하게 되죠. 저희가 이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실체를 알지 못하는 상황 같습니다.

○ 위원장 : 그럼 주차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술적인 가능성 같은 게 불명확하고, 빗물 저류조 활용에 대한 협의도 지금 완료되지 않고 불명확하고 자료상으로 본다면 차로를 한 차로 정도 증설한다는 부분도 현재 불명확하고, 여러 가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구체화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재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 일동 :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 신길 1동 경부제3녹지 지하주차장 건설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부서의 사업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부서장 : 영등포구청 주차문화과장 사업 설명

○ ○○○위원 : 차량진출입 포인트가 이쪽 대방역 교차로에서 인접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보행자하고도 그렇고, 차량들하고 상충 때문에 진출입 포인트를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사업부서장 : 예, 설계에 반영하겠습니다.

○ ○○○위원 : 여기 부지가 현재 부지가 공원부지예요?

○ 사업부서장 : 시설녹지입니다.

○ ○○○위원 :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은요?

○ 사업부서장 : 투자심사 한 후에 바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하겠습니다.

○ ○○○위원 : 영등포에서 올해 신길5동 공동주차장을 성공했던 게 언론에 나왔는데요. 그게 한 면당 조성비가 얼마 들었어요?

- 사업부서장 : 면당 거의 2억 원 조금 더 들어간 듯 싶습니다.
- ○○○위원 : 이거는 조성하는데 면당 얼마 드나요?
- 사업부서장 : 이거는 면당 4,000만 원~5,000만 원 그 선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사업부서 퇴장)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 환승주차장의 실정도 봤는데, 사실 실정을 보면 신길역, 영등포, 당산 환승주차장을 보면, 거기에 대한 실적이 그렇게 양호하지 않습니다. 주간에 9%, 야간에 1%, 점유율이 71%로 공실률이 상당히 많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하나의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비싸가 상당히 낮은데, 이번에 기회비용, 토지에 대한 기회비용을 받았습시다. 전체 부지에서 건축면적만 받았습시다.
- ○○○위원 : 사실 기존에 공원부지 지하로 가는데, 학교의 운동장을 이용하거나 똑같은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서 부지비용을 계산하는 게 맞나요?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은 다른 걸로 할 수 있는 건데요.
- ○○○위원 : 상황이 여기에 제가 다른 시설을 쓸 수 있는 경우면,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현재 시설복지라고 해 가지고 조그마한 공원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걸 과연 고려하는 게 일반적인 우리 기준에 맞나 하는 생각입니다.
- ○○○위원 : 만약 121면을 이 땅이 아니고 그 앞에 주택가에 집을 매입을 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면 과연 돈이 얼마나 들까 하는 그런 부분과 비교를 해서 평가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여기 지역이 지금 주차장 확보율이 높지 않아 '100%를 맞춰서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주택을 사야 되거든요. 그럼 121면을 지으려고 한 200억 들어도 아마 못 지을 겁니다.
- ○○○위원 : 여기 주차난이 진짜 심각한가요?
- ○○○위원 : 영등포가 전체 98.8%인데 이 지역은 74.1%다 이렇게 표기는 되어 있네요.
- ○○○위원 : 소위원회에서 우려사항은 실제 마을하고 주차장하고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 과연 주민들이 여기다 주차장을 만들어놨다고 해서 내가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그 필요성이 해소될 것이냐 였는데 그래서 주민들에게 그 대상지 주차장건설에 대한 동의서를 받았네요.
- ○○○위원 : 지금 주택가 공동주차장 같은 경우는 안전문제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시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래도 구비가 들어가야 되고 구에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에서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구에서 여러 가지 주민들이나 구청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위원장 : 그럼 아까 나왔던 교차로하고 진출입로와의 어떤 이격거리라든지 도로 문제라든지, 그

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통과시키겠습니다.

○ 위원 일동 :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 상도 3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부서의 사업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부서장 : 동작구청 교통행정과장 사업 설명

○ ○○○위원 : 상부 지상층에 주차를 하면 안 된다는 건가요?

○ 사업부서장 : 상부에는 주차장 사용 안합니다. 공원으로 조성합니다.

○ ○○○위원 : 현재 투자효율성 부분에서 수입이 건설비에 비해서 그렇게 높아보이지가 않은데, 예산을 조금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게 우선인지 아니면 저는 공원이 여기가 매우 필요해서 1층에 공원을 확보하는 것이지요.

○ 사업부서장 : 주차장이 필요해서 주차장을 건설하는 게 주목적이고, 옥상 부분에 대해서는 시각적으로 녹지를 입히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 : 지상부에는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사업부서장 : 지상부에는 설계가 주차하기가 지리적으로 좀 곤란할 것으로 지형이 좀 그렇습니다. 여기가 윗부분이고 경사가 아래쪽에 약 12m, 13m 정도의 높낮이가 있어서 상부층에 주차장을 건설하게 되면 이 주택가에서 들어오는 진입도로가 없다고 보여 집니다.

○ ○○○위원 : 지금 도로 인근으로 있는 부분이 지금 빠져 있던 말입니다. 그 부분까지 해서 좀 더 크게 했으면 효율성이 더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 사업부서장 : 실시설계 할 때는 여러 가지 사항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 이쪽에 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이고 이런 주차장은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공사비나 건설 사업비를 효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사업부서 퇴장)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 BC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저희가 출장 가면서 개인적으로는 필요한 것은 상당히 맞습니다. 주차난이 상당한데 이 비용도 아까 지적해 주셨지만, 되게 시설 낙후된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럭셔리한 시설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주차장이요. 그래서 사실 지하로 아니고 지상으로 해서 한다고 그러면, 단가 좀 낮출 수 있는 걸로 했으면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필요성은 인정되니까 아까 말씀했듯이 공사 단가나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서 하라는 조건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일동 :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 관악산 공원 입구 재조성 사업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부서의 사업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부서장 : 관악구청 공원조성팀장 사업 설명

○ ○○○위원 : 현재 관악산 휴게소에 있는 위탁개소가 현재 얼마나 되는지.

○ 사업부서장 : 지금 위탁 개소가 24개소입니다. 수탁자가 24명이고, 현재 금년 3월부터 2015년 12월 말까지 3년간 위탁기간이 선정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 : 미조성지의 고물상 있지요? 경관을 불량하게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위치하게 되었지요?

○ 사업부서장 : 당초에 사유지였는데 그걸 저희들이 매수를 하는 바람에 그것은 지금 현재 변상을 받고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 이 휴게소 건물을 왜 리모델링하는 거죠?

○ 사업부서장 : 이게 97년도에 신축을 했었는데, 당초에는 건축을 사우나 하고 그런 시설로 설계했었는데, 노점상이 내려오면서 식당 조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기 문제가 큰 문제가 있고, 건물 자체의 이용용도도 조금 그렇고 건물이 슬럼화 되어서 저희가 건물을 리모델링하고자 했습니다.

○ ○○○위원 : 지금 현재 산에 오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까?

○ 사업부서장 : 주로 거기 입구가 미팅폰트가 되어서 등산객들이 많이 몰려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서 퇴장)

○ ○○○위원 : 실무검토에서도 상당히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을 하고 있어서 시에서도 자기들 시비를 투입하겠다고, 주관부서에서 찬성을 한 거예요.

○ 위원장 : 필요성이 인정되니 실행과정에서 현재 입점 상가의 이전계획 등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대안을 마련하고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일동 :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 관악산도시자연공원 청룡산지구 조성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부서의 사업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부서장 : 관악구청 공원조성팀장 사업 설명
- ○○○위원 : 당초 투자심사 받아서 사업을 해 오다가 추가로 사업비가 더 들어가서 재심사의 퇴한건가요?
- 사업부서장 : 예, 그렇습니다.
- ○○○위원 : 청룡산 지구는 지금 일단 투자심사 진행이 되었고 공사가 마무리 되어 가고 있는데 일부 재해예방시설로 했던면 부분을 정리를 조금 하려고 하는 거 같습니다.
- 위원장 : 보상이 필요하고 공원조성이 필요한 부분만 선별적으로 최소화해서 하는 것을 조건을 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일동 :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 한강공원 자양나들목 개선, 한강공원 배수지공원 나들목 신설 사업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부서의 사업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부서 : 한강사업본부 담당주무관 사업 설명
- 위 원 장 : 수방이나 이런 것까지 같이 다 검토했나요?
- 사업부서 : 수방에 대해서는 서울지방 국토 관리청 하고, 구청 하천 점용 허가 받을 때 수방계획 검토를 받거든요. 그때도 크게 문제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 ○○○위원 : 사용자의 안내 교육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을 텐데, 꼭 여기 올 때 자전거를 타고 와야 되나? 내려서 걸어가면 되지, 자전거 끌고 가면 되는 거지. ‘이 공사를 꼭 해야 되겠다.’ 라는 거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돼요.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정량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다른 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지, 여태까지 이게 얼마나 수요가 몇 백%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 사업부서 : 차량통행량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심방향으로는 시간당 188대가 다니고 있습니다.
- ○○○위원 : 내가 볼 때 이 자양나들목은 개선해서, 사용안내를 통해서 개도를 통해서 충분히 이 사고를 예방하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은데,
- ○○○위원 : 만 3년도 채 안 된 거죠? 320m 앞에 나들목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일방통행 식으로 진행을 하다가,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다시 양방향으로 통행을 시키고, 또 사고가 나니까 그 옆에 보행자 통로를 하나 또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사업부서 : 예.
- ○○○위원 : 3년도 안 돼서 옆에다가 나들목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문제가 있어서 또 보행자통로를 그 인근에 만든다는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 위 원 장 : 한강공원배수지도 질문해 주세요.
- ○○○위원 : 한강 반대편에 공원조성 계획과 같이 들어와야지, 나들목만 뚫어서 하자고 들어오기에는 사업타당성이 떨어지지 않나요? 가서 볼 게 있어야 뚫어봐도 뭔가 좋은 거지, 반포공원까지 자전거 가려고 여기 뚫어놓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 사업부서 : 한강 공원 배후지역 이용자들은, 그 공원에 자전거도로밖에 없더라도, 사실 여기서 보기에 공원은 멀다라고 하시지만, 이용객들이 가십니다. 걸어서 자전거 타고요. 그래서... 분명히 있습니다.
- ○○○위원 : 노량진수산시장 보행교 신설예정지와 거리상 너무 가까워서 사업의 타당성 부분도 의심이 됨
- 공공투자관리센터 : 자양 나들목 하고, 한강배수지공원 시설 편익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구 도서가구가 되고, 인근동에 있는 가구 수를 근거로 해서, 가구당 617원이... 고려를 해서 그거를 해서 편익을 했는데, 편익은 자양나들목 같은 경우에서 했을 때는 0.68, 그다음에 배수지공원은 높게 나왔습니다.
- ○○○위원 : 이거는 문제가 한강 쪽으로 뚫어놨다고, 한강에서 이용할 시설이 없다는 거죠. 자전거 타는 거 말고요.
- ○○○위원 : 위치도 문제는 노량진수산시장에서 보행교를 신설했을 때를 대비하면, 방향을 저쪽으로 옮길 수 있어요
- ○○○위원 : 자양나들목 개선사업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거라고 보고요. 운행방법이나 이런 걸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 원 장 : 둘 다 재검토하는 걸로, 다른 의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 망원 초록길 조성사업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부서의 사업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부서장 : 한강사업본부 기전2팀장 사업 설명
- ○○○위원 : 특별히 초록길이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 사업부서장 : 기존에 주택가에서 한강 고수부지를 넘어가는데 녹도를 통하고 편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초록길 조성사업의 취지입니다.

- ○○○위원 : 망원정은 뭐예요?
- 사업부서장 : 망원정은 조선시대 때요. 지금은 한강의 선형이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망원정 앞이 한강이었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 귀족들이나 왕이 여름에 나와서 한강을 바라보고 쉬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 ○○○위원 : 그런데 그게 인접한 망원 생태공원하고 연계해서 조성을 하시는 계획이죠?
- 사업부서장 : 예, 그렇습니다.
- ○○○위원 : 그거랑 그 앞쪽에 보면 삼각형 녹지가 있죠. 도면에서 주차장 부지 바로, 주차장 부지 앞쪽으로 해서 그 사이에, 큰 도로 사이에 삼각형 녹지 있잖아요?
- 사업부서장 : 예.
- ○○○위원 : 그런데 이게 주차장이 없으면, 이 녹지 사이 이 도로 없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 사업부서장 : 그 부분이 다 초록길이 되는 겁니다.
- ○○○위원 : 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V자형 도로가,
- 사업부서장 : 그 도로는 없어지는 겁니다.
- ○○○위원 : 그렇죠? 그 부분도 지금 이 계획에 그것까지 폐쇄해서 녹지를 조성하는 것은 아닌가요?
- 사업부서장 : 예, 그렇습니다.
- ○○○위원 : 주차장이랑 다 연계돼서요.
- 사업부서장 :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 통로로 보시면 됩니다.
-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 원 장 : 더 질문 있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업부서 퇴장)
- ○○○위원 : 사업을 진행하는 거라,
- ○○○위원 : 거기가 다른 데는 깨끗하게 정비가 되고 거기가 지저분하게 되니까, 기왕이면 같이 해서 공원화 시키자,
- ○○○위원 : 환경이 조화가 안 되니까요.
- 위 원 장 : 예, 그렇습니다.
<망원초록길과 연계하여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망원정과 연결하고자 하는 추가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됨 - 적정>
- 위원장 : 서초구 방배로 하수암거 신설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부서의 사업설명을 듣고 기록 하겠습니다.

- 사업부서장 : 서초구청 치수방재과장 설명
 - ○○○위원 : 이런 경우가 제일 난감합니다. 전에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통과했는데요. 금액을 두 배씩 더 늘려가지고 이렇게 오시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이유도 못 찾겠고요.
 - 사업부서장 : 이번 기회에 완전히 이거를 침수해소를 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게 쓸 수 있게 다 해소했으면 합니다.
 - 위 원 장 : 지난번에 투자심사를 할 때는 그 부분만 공사를 하면, 침수가 예방된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 사업부서장 : 타당성 조사에서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침수는 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침수가 된다고 나와 있었는데, 이번에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도저히 침수를 남겨서는 안 되겠다,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해서 다 침수를 해소하자’
 - ○○○위원 : 왜 처음에는 토피가 부족하다고 그런 거예요?
 - 사업부서장 : 토피가 부족한 건 지하철 통과구간만 했는데, 지하철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 ○○○위원 : 저희는 일단 과장님 설명 조금 부족한 것을 제가 보충을 하자면, 당초에 설계할 때 내방역 중앙을 이렇게 통과하는 사거리를, 중앙통로에 설계를 했는데, 내방역 구간이 관이 통과할 수 없는 구간이라서 거기까지만 하되, 25cm 침수는 그렇게 설치해도 불가피하다 이렇게 설계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를 확인해 보니까 통과가 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온거죠
 - ○○○위원 : 이거는 못 이기겠습니다. 이미 주민들이,
 - ○○○위원 : 침수가 25cm 정도 되면, 반지하나 이런 데 가 가지고 이면도로 많거든요. 제일 낮은 쪽이 주 도로 말고 그 뒤에 있는 이면도로입니다. 거기가 지금 하수관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걸 뽑아 갖고 간선도로로 옮기는 작업을 하는데, 이쪽 이면도로에 25cm 침수가 되면 난감하죠. 공사는 공사대로 다 해놓고, 돈이 어떻든 들더라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위원 : 예산부서에서 이상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 위 원 장 : 100억이 넘는 사업비도 할 수 없이 이상 없다고 하는 건 우리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설명 다 하셨으면, 수고하셨습니다.
(사업부서 퇴장)
 - ○○○위원 : 두 배로 튕긴 거 외에는 안전을 담보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 기술자가 검토해서 왔으니까 무조건 그렇게, 아주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대항할 능력이 없습니다.
 - 위 원 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집중호우시 방배로 내방역 일대의 침수를 방지하려는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됨 - 적정>

이상으로 2013년 5월 투자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업별 심사결과 : 총 18건 중 적정 4건, 조건부추진 9건, 재검토 5건

연번	분 야	심사 구분	사업 구분	사 업 명	사업비 (억 원)	주관부서	심사결과
	계			18건	4,268		
1	일반 공공행정	신규	자치구 지원	광진구 복합청사건립	719	행정과 (광진구 산청사건립추진F)	조건부추진
2				서대문구 남가좌1동주민센터 신축	65	행정과 (서대문구 자치행정과)	재검토
3				성동구 성수1가제2동 복합청사 신축	82	행정과 (성동구 자치행정과)	조건부추진
4				동대문구 제기동 청사 신축	88	행정과 (동대문구 자치행정과)	재검토
5		재심사		중랑구 상봉2동 복합청사 건립	177	행정과 (중랑구 자치행정과)	조건부추진
6	보건	신규	시사업	한국정보화진흥원 이전부지매입	408	자산관리과	적 정
7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증축	297	보건의료정책과 (어린이병원)	조건부추진
8	문화 및 관광		자치구 지원	신길동 특성화도서관 건립	223	서울도서관 (영등포구 교육지원과)	조건부추진
9	공공질서 및 안전	신규	시사업	성동소방서 신설	308	소방행정과	적 정
10	수송 및 교통	신규	자치구 지원	삼일로 관광버스 지하주차장 건설	762	주차계획과 (중구 치수방재과)	재검토
11				신길1동 경부제3녹지 지하주차장 건설	60	주차계획과 (영등포구 주차문화과)	조건부추진
12				상도3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68	주차계획과 (동작구 교통행정과)	조건부추진
13	국토 및 지역개발	신규	시사업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신림계곡지구-입구) 재조성	44	공원조성과	조건부추진
14		재심사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청룡산지구) 조성	160	공원조성과	조건부추진
15		신규		한강공원 자양 나들목 개선	71	한강사업본부 시설부	재검토
16		신규		한강공원 배수지공원나들목 신설	48	한강사업본부 시설부	재검토
17		재심사		망원초록길 조성사업(한강 망원 보행녹도 설치)	453	한강사업본부 시설부	적 정
18	환경보호	재심사	자치구 지원	서초구 방배로 하수암거신설	235	물재생계획과 (서초구 재난치수과)	적 정